

제240회 정례회
2005. 7. 15(금)

검 토 보 고 서

-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.

-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「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동 예산안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의 개정(2005. 1. 27)에 따라, 학교신설 등의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예산으로 제출된 채무부담 행위입니다.

- 먼저 **BTL 사업방식 개요**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.
 -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약정된 정부지급금, 즉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입니다.
 - 정부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임대료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·보수비용 등 제반비용을 합산한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은 연차적 재정 부담과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.

○ **BTL 사업의 추진배경**을 말씀드리면,

-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를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정책목표 달성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, 특히 재원부족으로 보류 또는 지연되고 있는 초·중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BTL사업의 대상사업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설로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1월 동법 개정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

○ **BTL 사업의 기대효과**는,

-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점이며, 그 동안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졌던 노후교사 증·개축 및 체육관 신축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○ 다음으로,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**BTL 사업추진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내역**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- 사업시행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,
-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는,
 - 장전초등학교 등 학교신설이 6개교 609억 3,900만원,
 - 문의초등학교 등 다목적교실 증·개축이 9개교 123억 9,200만원으로 총 733억 3,100만원이며,
 - 매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용으로 72억 423만 8천원씩 2007년부터 20년간 균등상환할 예정으로 있어 채무부담행위액은 모두 1,440억 8,476만원입니다.

○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채무부담행위내역은,
 -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,
 - 금회 추경에 2005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예산으로 제출한 것으로서,
 -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재원은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재원을 지원하지만, 다목적교실에 대한 증·개축비는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향후도 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-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,

- ①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단위를 약 500억원 내외로 묶어 추진하게 되고, 상환기간도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고, 그 동안 사업을 해 오던 교육시설 공사마저 타시도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더욱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경상남도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산하 6~7개 시도지회가 BTL 사업 불참선언을 하였으며, 지난 7월 8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도 BTL 사업에 불참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.
- ② BTL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비는 물론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 임대료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·보수비용 등 제반비용을 합산한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서,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사업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- ③ 사업자 선정시 총 1,000점의 평가점수 중 가격평가가 550점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최저가 투찰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며, 결국 부실 공사의 우려도 커지게 됩니다.
- ④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부분을 BTL로 추진할 경우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 공익적 부분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.

⑤ BTL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못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.

⑥ 2007년도부터 향후 20년간 사업비를 매년 균등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, 향후 20년간 우리 도내에 추가로 신설되어야 할 예상학교수, 노후교사 증·개축 예상소요량, 우리 도의 채무상환 능력 등이 고려된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이상과 같이 학교신설 및 다목적체육관 증·개축 BTL 사업은,

-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, 시중의 민간자금을 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, 학교 신설 및 노후교사 증·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
- 중소기업 건설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져,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, 이에 따라 지역건설협회의 BTL 사업 불참선언 등 집단적인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추가경정 예산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